



제 4 2 2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단체 시설비 보조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50호)

2025.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체육단체 시설비 보조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2. 23.
3. 회 부 일: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체육단체 시설비 보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 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략)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u>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u> 일부를 보조한다.	② ----- ----- ----- ----- ----- ----- ----- <u>시설비,</u> <u>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단체 및 체육 과학 연구 기관에 대해 경비·연구비를 보조하고 있음.¹⁾

[2024년도 체육단체 등 운영 지원 내역]

체육단체	2024년 운영 지원 내역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298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00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500억원
스포츠윤리센터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76억원
기타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368억원 - 도핑방지위원회 운영 및 활동 지원 105억원 -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58억원 -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75억원 -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운영 38억원

자료: 예산정책처(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그런데 조문상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체육단체에 체육시설 설립비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보조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체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비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건립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바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현행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등²⁾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미 체육단체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음.³⁾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 전라북도도 동일한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체육단체 시설비 지원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 개요	국비지원액 (백만원)
이천선수촌 건립	대한장애인 체육회	○ 총사업비 : 116,900백만원 (국비 101,100/ 기타 민간후원금·적립금 15,800) ○ 사업기간 : '06년 ~ '21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18조②, 제22조①제3·10호	101,100
평창동계 훈련센터	대한체육회	○ 총사업비 : 22,100백만원 (국비 6,800/ 자비 15,300)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14조①	6,800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대한체육회	○ 총사업비 : 41,547백만원 (국비100%) ○ 사업기간 : '20년 ~ '24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22조①제10호	41,547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축구협회	○ 총사업비 : 41,615백만원 (국비18.5%) ○ 사업기간 : '22년 ~ '25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13조①, 제22조①제2호	7,700 ('22 ~ '23)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국민체육 진흥공단	○ 총사업비 : 53,523백만원 (국비100%) ○ 사업기간 : '22년 ~ '27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22조①제8·10호	4,490 ('22 ~ '24년)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대한체육회	○ 총사업비 : 43,859백만원 (국비100%) ○ 사업기간 : '24년 ~ '28년 ○ 지원근거 : 현행법 제14조①	2,000 ('24년) 총사업비 아닌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 별도지원('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또한, 시설비 지원·보조가 주로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타 입법례들과 달리 개정안은 ‘보조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속성이 강한바, 개정안과 같이 범위가 불확정적인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게까지 시설비 지원의무를 규정하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음.⁴⁾

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도 동일한 취지에서 신중검토 의견임.

[시설비 지원·보조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조문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조</u> 할 수 있다.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u>대여하거나 보조</u> 할 수 있다.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u>공공 편익시설 설치</u>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u>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u>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 국가는 <u>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u> 또는 재해 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u>보조</u> 할 수 있다.

- 덧붙여,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지자체 관리 소관임에도⁵⁾ 개정안과 같이 제18조제2항에 ‘시설비 지원’을 명시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의무가 국가에도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개정 시 국가와 지자체의 소관 사무를 고려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체계·자구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감독)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문 의 처

02)6788-5375
